

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 특례법의 적용범위 :배제하거나 완화 적용 가능

&nbsp; <P class=HStyle0>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  
한 손실보상의 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 
당사자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  
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여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수 있다.</P> <P  
class=HStyle0>(대법원 2000.09.08. 선고 99다26924 판결)</P> <P class=HStyle0>※ 같은 뜻의  
판례 : 대법원 1993.05.27 선고 92다34667 판결 ; 1996.04.26 선고 96다4419 판결 ; 1998.05.22  
선고98다2242,2259 판결 ; 1999.03.23 선고 98다48866 판결 ; 전주지방법원 2005.08.26 선고  
2003가합3972 판결</P>